

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 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제1항’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에이즈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서울시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으로 '21.12월에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
- 위탁기간 : 2022.1.1. ~ 2024.12.31.(3년)
- 사업비 : 340,000천원 ('22년)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: 170,000천원
 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: 170,000천원
- 수탁자 선정방법 : 재위탁
- 추진현황
 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최초위탁 : 1999.1.14.
 - 1차 ~ 2차 : 1999.1.14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3차 ~ 9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
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최초위탁 : 1997.1.10.
 - 1차 ~ 4차 : 1997.1.10. ~ 2000.12.31.(1년 단위)
 - 5차 ~ 11차 : 2001.1.9. ~ 2021.12.31.(3년 단위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
 -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육
 - 보건관계자 대상 교육
 - HIV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교육
 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-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
 - 성소수자 대상 홍보 및 노인 대상 홍보
 - 일반인 대상 및 대중매체 홍보
 -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
 -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

다. 필요성

-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에이즈 감염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·홍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·물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및 제23조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·관리와 감염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감

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

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유경숙 (☎ 2133-7684)